◉문화재청공고제2020-217호

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서 공시송달

「국유재산법 제72조～제73조」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2018년 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6일

문화재청장

1. 제목: 2018년도분 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서 공시송달

2. 공고 내용

대상자	점유지	점유기간	점유 면적	변상금	연체료	비고
장문현	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64-509	2018.1.1.~12.31 (1년)	36㎡	269,560원	16,910원	연체료(229일) : 2019.11.1.～2020.6.16
장문현	서울 성북구 석관동 409	2018.1.1.~12.31 (1년)	497㎡	11,331,600원	710,940원	연체료(229일) : 2019.11.1.～2020.6.16

※ 고지내역 : 1차 폐문부재(2020.6.19.) / 2차 폐문부재(2020.6.22.)

3. 법적근거

가. 변상금: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

나. 연체료: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

4. 공고기간: 2020.7.6.～7.20.(15일간)

5. 공고내용

가. 위 변상금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(02-948-0140)로 연락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또한,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「국세징수법」제23조의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 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아울러,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「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」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.

6. 문의처: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

(주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, 전화: 02-948-0140, 팩스: 02-972-6301)

◉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0-37호

공시송달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0년 7월 6일

서울지방병무청장

1. 송달의 이유

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제70조에 의거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